

圖書館法施行令과 圖書館振興法施行令 條文 對比表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p>◎<u>도서관법시행령</u></p> <p>제 1조(목적) 이 영은 <u>도서관법</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조(특수도서관의 이용자) <u>도서관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 7호에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 자</u>”라 함은 <u>의료기관의 환자</u>를 말한다.</p> <p>제 3조(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 <u>법</u> 제 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u>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u>은 별표 1과 같다.</p> <p>제 4조(사서직원등의 배치기준) <u>법</u> 제 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u>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u>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 5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등) ①<u>법</u> 제 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사서직원은 별표 3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u>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사람</u>이어야 한다.</p> <p>(신설)</p> <p>제 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u>법</u>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u>도서관자료</u>(이하 “자료”라 한다)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u>도서관진흥법시행령</u></p> <p>제 1조(목적) 이 영은 <u>도서관진흥법</u>(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조(특수도서관의 이용자) <u>법</u> 제 2조제 7호에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 자</u>”라 함은 <u>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자, 군사시설 또는 교도소에서 복무·근무 또는 복역중인 자 기타 특수환경에 처한 자</u>를 말한다.</p> <p>제 3조(도서관시설 및 자료기준) <u>법</u> 제 5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u>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u>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4조(사서직원등의 배치기준) <u>법</u> 제 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u>사서직원의 배치기준</u>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두어야 할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 5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등) ①<u>법</u> 제 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사서직원은 별표 3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u>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사람</u>이어야 한다.</p> <p>제 6조(시책) <u>문화부장관이 법</u> 제 6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이하 “사서직원등”이라 한다)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서직원등의 연수 2. 사서교육과정의 개선 <p>제 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u>법</u>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u>도서관자료</u>(이하 “자료”라 한다)의 상호교환 또는 이관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p>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p> <p>2. 자료 이용자의 편의</p> <p>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p> <p><u>(신설)</u></p> <p>②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이용가치의 상실</p> <p>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p> <p>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p> <p>③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 2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제외한다)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u>3퍼센트</u>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장서량의 <u>50퍼센트</u>를 초과할 수 없다.</p> <p>제 7 조(도서관발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u>문교부차관</u>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p> <p>1.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u>문교부</u>·체신부·<u>문화공보부</u>·과학기술처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도서관과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각 1인</p> <p>2. 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회의 장</p> <p>3. <u>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 교수</u> 기타 <u>도서관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중에서 <u>문교부장관</u>이 위촉하는 사람</p> <p>③제 2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u>3년</u>으로 한다.</p> <p>제 8 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p> <p>2. 자료 이용자의 편의</p> <p>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p> <p>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p> <p>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이용가치의 상실</p> <p>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p> <p>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p> <p>③자료(제 2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를 제외한다)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u>100분의 3</u>이내로 하되, 당해 연도 수입 장서량의 <u>100분의 50</u>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 8 조(도서관발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 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상 30인이내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u>문화부차관</u>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p> <p>1. 경제기획원·내무부·재무부·<u>교육부</u>·<u>문화부</u>·<u>보건의사회부</u>·체신부·<u>총무처</u> 및 과학기술처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도서관과 관련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각 1인</p> <p>2. 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회의 장</p> <p>3. <u>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u> 기타 <u>도서관 및 출판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중에서 <u>문화부장관</u>이 위촉하는 사람</p> <p>③제 2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u>2년</u>으로 한다.</p> <p>제 9 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p> <p>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p>제9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u>도서관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u> 및 그 기능의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3항대비) 3. <u>도서관진흥기금</u>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2항대비) 4. 기타 도서관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u>문교부장관</u>이 부의하는 사항 	<p>제10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u>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u> 3. <u>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의 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총괄에 관한 사항</u> 4. 기타 도서관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u>문화부장관</u>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u>문교부</u> 소속 공무원중에서 <u>문교부장관</u>이 임명한다.</p>	<p>제12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u>간사는 문화부</u> 소속 공무원중에서 <u>문화부장관</u>이 임명한다.</p>
<p>제12조(도서관진흥기금사무의 위임등) ①<u>문교부장관</u>은 <u>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중 특정도서관 또는 특정지역 도서관진흥을 조건으로 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된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에 위임한다.</u>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사무를 위임받은 교육위원회는 매회계연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20일까지 <u>문교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1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의 설립·시설 및 운영의 보조 2. <u>도서관정보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의 보조</u> 3.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시설) 4. 기타 도서관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p>②<u>문교부장관</u>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p>	<p>제1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의 설립, 시설·자료의 확충 및 운영의 보조 2. <u>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의 보조</u> 3.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단체의 연구활동 지원 4. <u>도서관의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 지원</u> 5. 기타 도서관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지원 <p>②<u>문화부장관</u>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이를 운용한다.</p>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p>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치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탁</p> <p>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u>문교부장관</u>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3월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p> <p>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등) ①<u>문교부장관</u>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사무를 위임받은 <u>교육위원회</u>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그 기금의 지출 및 수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원을 임명하여야 한다.</p> <p>②<u>문교부장관</u> 및 <u>교육위원회</u>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신설)</p>	<p>1. 금융기관 또는 채신관서에의 예치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기타 다른 기금에의 예탁</p> <p>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①<u>문화부장관</u>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 3월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지출원인행위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p> <p>제15조(기금의 회계기관등) ①<u>문화부장관</u>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사무를 위임받은 <u>서울특별시</u>·<u>직할시장</u> 또는 <u>도지사</u>(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그 기금의 지출 및 수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p> <p>②<u>문화부장관</u> 및 <u>시·도지사</u>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16조(국내의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 1항제 3호 및 제 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도서관과의 자료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p> <p>1. <u>국내의 자료의 조사 및 수집</u> 2. <u>자료목록의 국제교류</u> 3. <u>국가서지·납본속보·종합목록 기타 필요한 서지의 발간·배포</u> 4. <u>분담수서와 상호대차제도의 수립·시행</u> 5. <u>국내의 회귀자료의 복제와 배부</u> 6. <u>국제도서관기구에의 가입과 국제간 공동사업 수행에의 참여</u></p>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p>제16조(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중에 <u>법 제16조제1항제5호의</u>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수량·교류 대상국가등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에 속하는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제교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7조(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제작한 자료중에 <u>법 제16조제1항제6호의</u>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필요한 수량, 교류 대상국가등을 명시하여야 한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에 속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p> <p>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국제교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자기관의 장에 대하여 당해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7조(국립중앙도서관의 지도·지원) 국립중앙도서관은 <u>제16조제1항제6호의</u>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작 및 대차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도서관종류별 시범도서관의 운영 4. 사회교육활동 및 국민독서운동 5. 자료의 국제교류 6. 도서관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p>(신설)</p>	<p>제18조(국립중앙도서관의 지도·지원) 국립중앙도서관은 <u>법 제16조제1항제7호의</u>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지원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 2. 자료의 선정·교환·이관·폐기·제작 및 대차 3. 국민독서운동의 지도·지원 4. 지역별·도서관종류별 시범도서관의 운영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 6. 자료의 국제교류 7. 도서관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p>제19조(독서생활화를 위한 시책) <u>법 제16조제1항제8호의</u>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령별·직업별·계층별 독서운동 2.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독서지도 활동 3. 장애인등을 위한 독서활동 4.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보급 및 독서진흥 5. 문화시설·교육시설등 관련기관과의 협조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p>제18조(사서직원의 연수등)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사서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한다.</p> <p>②사서직원의 연수는 일반연수와 특별연수로 구분한다.</p> <p>③사서직원의 연수대상·연수과정 기타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p> <p>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사서직원의 연수를 다른 도서관이나 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를 둔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신설)</p>	<p>제20조(도서관직원에 대한 연수) ①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직원(사서직원등과 도서관 봉사업무에 관련된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서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연수과정은 일반연수과정과 특별연수과정으로 구분하되, 일반연수과정은 연수를 받고자 하는 도서관직원이 5년에 1회이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③각 도서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에 소속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p> <p>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연수를 다른 도서관·연수기관 또는 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p> <p>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기타 도서관직원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p>
<p>제19조(제공 및 납본자료등) ①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3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도 2. 음반·비디오 자료 3. 슬라이드 4. 전산화 자료중 테이프 및 디스크 5. 마이크로 형태물중 창작된 자료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할 때에는 도서관자료납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을 한 자에 대하여 도서관자료납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가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p>	<p>제21조(제공 및 납본자료등) 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라 함은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료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도 (삭제) 2. 슬라이드 3. 전산화 자료중 테이프 및 디스크 4. 마이크로 형태물중 창작된 자료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할 때에는 도서관자료납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③국립중앙도서관에 자료를 납본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납본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p>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p>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 청구를 받은 때에는 <u>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u></p> <p>⑤국립중앙도서관장은 <u>납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납본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u></p> <p>(신설)</p> <p>제20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법 제1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한다.</p> <p>②법 제1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u>문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번호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료번호의 부여시에 자료분류기호를 부가하여 부여한다.</p> <p>④자료번호 및 자료분류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대상·절차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는 <u>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u>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p> <p>⑤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u>법 제4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u></p> <p>(신설)</p>	<p>(삭제)</p> <p>④국립중앙도서관장은 <u>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납본업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u></p> <p>⑤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납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납본하지 아니한 자료에 대하여 국가서지 또는 추천자료서지에의 수록을 거부할 수 있다.</p> <p>제22조 (국제표준자료번호의 부여) ①법 제1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는 국제표준도서번호와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로 구분한다.</p> <p>②법 제18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자는 <u>문화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료번호부여신청서에 출판사의 연혁·출판실적 기타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p> <p>③국립중앙도서관장은 자료의 이용과 유통과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료번호의 부여시에 자료분류기호를 부가하여 부여할 수 있다.</p> <p>④자료번호 및 자료분류기호(이하 “한국문헌번호”라 한다)의 부여대상·절차 및 표시방법등에 관하여는 <u>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u>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p> <p>⑤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한 업무를 <u>지역대표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u></p> <p>⑥국립중앙도서관장은 <u>한국문헌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그 자료에 문헌번호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문헌번호의 부여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u></p>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p>제21조(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 ①한국문헌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제23조(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 ①한국문헌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한국문헌번호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p>
<p>(신설)</p>	<p>②심의회는 관련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도서 관계 및 출판계 인사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②심의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p>	<p>③심의회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p>
<p>제2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국립공공도서관 단위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p>	<p>제24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한다.</p>
<p>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③위원은 도서관장과 봉사대상구역내의 교육계·문화계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당해 도서관의 설립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③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당해 도서관의 봉사대상구역내의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p>
<p>제23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제25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p>(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p>제24조(운영위원회 회의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6조(운영위원회 회의등) 제11조의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제25조(사립공공도서관등의 등록) 법 제24조 및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 교육장(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27조(사립공공도서관등의 등록) 법 제25조제1항 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설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문화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p>(신설)</p> <p><u>제26조</u>(사립공공도서관등의 폐관신고) <u>법 제28조제1항</u>(<u>법 제40조의</u>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폐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폐관신고서를 <u>관할 시·군 교육장</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제27조</u>(공공도서관의 사용료) <u>법 제30조의</u>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입관료</u> 2. <u>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u> 3. <u>개인연구실·회의실등 이용수수료</u> 4. <u>자료복사료</u> <p>(신설)</p> <p>(신설)</p> <p><u>제28조</u>(도서관정보협력망의 조직) ①<u>법 제45조의</u> 규정에 의한 도서관정보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은 도서관의 종류별로 이를 구성할 수 있다.</p>	<p><u>제28조</u>(청문의 절차) ①<u>법 제25조제3항</u>(<u>법 제38조의</u>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에정일 7일 전까지 피청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의 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청문인 또는 그 대리인은 구두로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p> <p>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p> <p><u>제29조</u>(사립공공도서관등의 폐관신고) <u>법 제27조</u>(<u>법 제38조의</u>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u>도서관폐관신고</u>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폐관신고서를 <u>문화부장관</u>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u>제30조</u>(공공도서관의 사용료) <u>법 제29조의</u> 규정에 의하여 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삭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u> 2. <u>개인연구실·회의실등 이용 수수료</u> 3. <u>자료 복사료</u> 4. <u>장기간 강습·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u> 5. <u>입관료</u>(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p><u>제31조</u>(협력망등의 구성) ①협력망은 도서관의 종류별로 이를 구성할 수 있다.</p>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p>②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표관이 지방대표관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에 한한다)의 공공도서관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방대표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앙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②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대표관이 지방대표관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 및 구(자치구에 한한다)의 도서관중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방대표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앙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p>
<p>제29조(협력망운영계획) ①중앙관의 장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3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지역대표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력망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제32조(협력망운영계획)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협력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역대표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지역대표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력망운영계획에 따라 당해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중앙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③중앙관의 장은 협력망 상황을 연차별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신설)</p>	<p>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의 장이 보고할 때에는 지역대표관과 협력망에 참가하는 각종 도서관은 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현장조사 요구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30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4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문교부장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관할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p>	<p>제33조(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문화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②문화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③문화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p> <p>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부령으로 정한다.</p>
<p>(신설)</p>	<p>제34조(권한의 위임등) 문화부장관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p>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 1조(시행일) 이 영은 <u>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u> 다만, 제 20조의 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제 2조(다른 법령의 폐지) <u>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납본규정은 이를 폐지한다.</u></p> <p>(신설)</p> <p>제 3조(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설립된 도서관으로서 법 제 38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이나 신체장애자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관할 시·군 교육장에게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u>기금중 특정도서관 또는 특정지역 도서관의 진흥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의 관리·운용</u></p> <p>2. <u>법 제 25조(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시정명령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업무</u></p> <p>3. <u>법 제 26조(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 및 서류제출 요구</u></p> <p>4. <u>법 제 27조(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립공공도서관의 폐관신고의 수리</u></p> <p>5. <u>법 제 37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등록</u></p> <p>6. <u>법 제 4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u></p> <p>제 1조(시행일) 이 영은 <u>1991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u></p> <p>제 2조(다른 법령의 폐지) <u>도서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별표 2중 대학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대통령령에서 이에 관하여 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u></p> <p>제 3조(국·공립 공공도서관 관장의 사서직 임용시기) <u>법 부칙 제 4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1996년 12월 31일을 말한다.</u></p> <p>(삭제)</p>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p>(신설)</p>	<p>제 4 조(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법시행령 제 5 조·부칙 제 5 조 및 부칙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사람은 이 영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으로부터 사서자격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법시행령 부칙 제 5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동부칙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정사서 또는 2급정사서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 부칙 제 5 조제 4 항 또는 동부칙 제 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영 시행후 2년이내에 문화부장관에게 해당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신설)</p> <p>제 4 조(도서관의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에 의한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기준과 별표 2에 의한 사서 직원·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p> <p>제 5 조(정사서·준사서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사서직원의 자격증을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종전의 제 4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사서 또는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별표 3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②이 영 시행당시 사서직원의 자격증 또는 상급 자격증을 받기 위하여 종전의 제 4 조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별표 3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본다.</p>	<p>제 5 조(지정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도서관법시행령 별표 3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문화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 본다.</p> <p>제 6 조(도서관의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배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에 의한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기준과 별표 2에 의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은 이 영 시행일부 터 5년이내에 당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p> <p>(삭제)</p>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p>③이 영 시행당시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사서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이 되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문교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불구하고 이 영에 의하여 준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p> <p>④제 1항 내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제 3항의 경우에는 4년)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해당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교부장관이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부칙 제 6조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 6조(정사서 및 준사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정사서로서 별표 3의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에 의한 1급정사서로, 1급정사서의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영에 의한 2급정사서로 보며, 이 영 시행당시 준사서는 이 영에 의한 준사서로 본다.</p> <p>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1급정사서 또는 2급정사서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문교부장관에게 해당 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p> <p>(신설)</p>	<p>(삭제)</p> <p>제 7조(국·공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에 관한 경과조치) 국·공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는 제30조제 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받을 수 있다.</p> <p>제 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96조제 3호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p> <p>②저작권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 3조제 1호중 “도서관법”을 “도서관진흥법”으로 한다.</p>

圖書館法施行令				
〔별표 1〕 도서관 종류별 시설 및 자료 기준 (제 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기준인구	시 설		자 료	
	건 물 (제곱미터)	열 램 석 (좌석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가 (권)
2만미만	264이상	60이상	3,000이상	300이상
2만이상 5만미만	660이상	150이상	6,000이상	600이상
5만이상 10만미만	990이상	200이상	15,000이상	1,500이상
10만이상 30만미만	1,650이상	350이상	30,000이상	3,000이상
30만이상 50만미만	3,300이상	800이상	90,000이상	9,000이상
50만이상	4,950이상	1,200이상	150,000이상	15,000이상

비고 : 가. 기준인구수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당해 시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 구 · 읍 · 면의 인구를 말한다.

나. 봉사대상기준인구가 2만이상인 공립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외에 참고열람실 · 연속간행물실 · 시청각실 · 회의실 · 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은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라. 노인 및 신체장애자를 위하여는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열람석과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마.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외에 연속간행물을 봉사대상 1천인당 1종, 시청각자료를 봉사대상 1천인당 10종을 각각 갖추고, 기타 향토자료 · 전산화자료 · 행정자료등을 갖추어야 한다.

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봉사대상기준인구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료기준은 자체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제 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기준인구 (인)	시 설		자 료	
	건 물 (제곱미터)	열 램 석 (좌석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가 (권)
2만미만	264이상	60이상	3,000이상	300이상
2만이상 5만미만	660이상	150이상	6,000이상	600이상
5만이상 10만미만	990이상	200이상	15,000이상	1,500이상
10만이상 30만미만	1,650이상	350이상	30,000이상	3,000이상
30만이상 50만미만	3,300이상	800이상	90,000이상	9,000이상
50만이상	4,950이상	1,200이상	150,000이상	15,000이상

비고 : 가. 봉사대상기준인구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당해 시 (구가 설치된 시를 제외한다) · 구 · 읍 · 면의 인구를 말한다.

나. 봉사대상기준인구가 2만이상인 공립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외에 참고열람실 · 연속간행물실 · 시청각실 · 회의실 · 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은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라.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는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열람석과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마. 공공도서관에는 기본장서외에 연속간행물을 봉사대상 1천인당 1종, 시청각자료를 봉사대상 1천인당 10종을 각각 갖추고, 기타 향토자료 · 전산화자료 · 행정자료등을 갖추어야 한다.

바. 사립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봉사대상기준인구 2만인미만에 대한 시설기준으로 하며, 자료기준은 자체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p>2. <u>대학도서관</u>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대학설치기준령 및 전문대학설치기준령의 규정에 의하되, 학술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청각기재·전산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p>		<p>(삭제)</p>																											
<p>3. <u>학교도서관</u> 학교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의 규정에 의하되, 교수·학습자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청각·컴퓨터 교육자료등을 갖추어야 한다.</p>		<p>(삭제)</p>																											
<p>4. <u>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u></p>		<p>2. <u>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봉사대상</th> <th style="width: 85%;">시 설 및 자 료 기 준</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 중</td> <td>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이어야 한다.</td> </tr> </table>	봉사대상	시 설 및 자 료 기 준	공 중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이어야 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h style="width: 15%;">봉사대상</th> <th style="width: 85%;">시 설 및 자 료 기 준</th>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 중</td> <td>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이어야 한다.</td> </tr> </table>	봉사대상	시 설 및 자 료 기 준	공 중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이어야 한다.																				
봉사대상	시 설 및 자 료 기 준																												
공 중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이어야 한다.																												
봉사대상	시 설 및 자 료 기 준																												
공 중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이어야 한다.																												
<p>5. <u>특수도서관(시각장애자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u></p>		<p>3. <u>특수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u></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0%;">봉사대상</th> <th colspan="2" style="width: 40%;">시 설</th> <th colspan="2" style="width: 40%;">자 료</th> </tr> <tr> <th style="width: 15%;">건 물</th> <th style="width: 25%;">기재·기구</th> <th style="width: 15%;">장 서</th> <th style="width: 25%;">녹음테이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 각 장 애 자</td> <td>·면적: 66제곱미터 ·서고: 25퍼센트 이상 ·인쇄실: 35퍼센트 이상</td> <td>1. 점자제판기 2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3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점자제판기 1천원을 추가하여야 한다.</td> <td>1천500권이 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1천원을 추가하여야 한다.</td> <td>500점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200점을 추가하여야 한다.</td> </tr> </tbody> </table>	봉사대상	시 설		자 료		건 물	기재·기구	장 서	녹음테이프	시 각 장 애 자	·면적: 66제곱미터 ·서고: 25퍼센트 이상 ·인쇄실: 3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2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3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점자제판기 1천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1천500권이 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1천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500점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200점을 추가하여야 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 style="width: 10%;">봉사대상</th> <th colspan="2" style="width: 40%;">시 설</th> <th colspan="2" style="width: 40%;">자 료</th> </tr> <tr> <th style="width: 15%;">건 물</th> <th style="width: 25%;">기재·기구</th> <th style="width: 15%;">장 서</th> <th style="width: 25%;">녹음테이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 각 장 애 자</td> <td>·면적: 66제곱미터 ·서고: 25퍼센트 이상 ·인쇄실: 35퍼센트 이상</td> <td>1. 점자제판기 2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3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점자제판기 1천원을 추가하여야 한다.</td> <td>1천500권이 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1천원을 추가하여야 한다.</td> <td>500점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200점을 추가하여야 한다.</td> </tr> </tbody> </table>	봉사대상	시 설		자 료		건 물	기재·기구	장 서	녹음테이프	시 각 장 애 자	·면적: 66제곱미터 ·서고: 25퍼센트 이상 ·인쇄실: 3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2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3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점자제판기 1천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1천500권이 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1천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500점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200점을 추가하여야 한다.
봉사대상		시 설		자 료																									
	건 물	기재·기구	장 서	녹음테이프																									
시 각 장 애 자	·면적: 66제곱미터 ·서고: 25퍼센트 이상 ·인쇄실: 3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2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3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점자제판기 1천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1천500권이 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1천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500점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200점을 추가하여야 한다.																									
봉사대상	시 설		자 료																										
	건 물	기재·기구	장 서	녹음테이프																									
시 각 장 애 자	·면적: 66제곱미터 ·서고: 25퍼센트 이상 ·인쇄실: 3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2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3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점자제판기 1천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1천500권이 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1천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500점이상. 다만, 건물면적이 33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200점을 추가하여야 한다.																									
<p>비고: 가. 건물면적이 99제곱미터이상일 때는 녹음실·열람실 및 사무실의 크기가 각각 건물면</p>		<p>비고: 가. 건물면적이 99제곱미터이상일때에는 녹음실, 열람실 및 사무실의 크기가 각각 건물</p>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p>적의 1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나.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등의 건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사서직원·사서교사 및 실기교사(사서)의 배치기준(제 4조관련)</p>		<p>면적의 1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나. 건물 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등의 건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제 4조 관련)</p>	
구 분	배 치 기 준	구 분	배 치 기 준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공공도서관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3인을 두되, 그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6천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대학도서관	당해 대학의 학생수가 1천인이하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4인을 두되, 그 학생수가 1천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학생수 1천인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두며 장서가 2만권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만권마다 사서직원 1인을 더 둔다.		(삭제)
학교도서관	<p>1. 국민학교에는 36학급미만인 경우 사서교사·겸임사서교사(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학급이나 교과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실기교사(사서)중 1인을 두며, 36학급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둔다.</p> <p>2.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24학급미만인 경우 사서교사 1인을 두거나 겸임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 각 1인을 두며, 24학급이상인 경우 사서교사 2인을 두거나 사서교사와 겸임사서교사 각 1인 또는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각 1인을 둔다.</p>		(삭제)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 도서관	1.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각장애자를 봉사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은 사서직원 1인이상을 둔다.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 도서관	1. 공중을 봉사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준용한다. 2. 시각장애자를 봉사대상으로 하는 특수도서관은 사서직원 1인이상을 둔다.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제 5 조 관련)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 (제 5 조 관련)	
자 격	자 격 요 건	자 격	자 격 요 건
1급정사서	1. <u>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u>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u>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u>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u>문교부령</u> 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u>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u> 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u>문교부장관</u> 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u>문교부령</u> 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급 정사서	1. <u>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u>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2.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u>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과</u> 외의 박사학위를 받거나 정보처리기술사 자격을 받은 사람 3.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 근무경력 기타 <u>문화부령</u> 이 정하는 기관에서의 <u>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u> 에 관한 연구경력(이하 “도서관등 근무경력”이라 한다)이 6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4. 2급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9년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u>문화부장관</u> 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u>문화부령</u> 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이하 “소정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2급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u>도서관학과 또는 문헌정보학과</u> 를 졸업한 사람 2. <u>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u>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2급 정사서	1.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u>문헌정보학과 또는 도서관학과</u> 를 졸업한 사람 2. <u>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u>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圖書館法施行令		圖書館振興法施行令	
	<p>(신설)</p> <p>3. <u>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u>의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4. <u>준사서</u>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p>5. <u>준사서</u>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u>4년</u>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6. 대학을 졸업하여 <u>준사서</u>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u>1년</u>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3. <u>교육대학원에서 도서관교육 또는 사서교육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u></p> <p>4. <u>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u>의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5. <u>준사서</u> 자격증을 소지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p> <p>6. <u>준사서</u>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u>3년</u>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7. 대학을 졸업하여 <u>준사서</u> 자격증을 소지하고 도서관등 근무경력이 <u>1년</u>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준사서	<p>1. 전문대학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p> <p>2.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u>도서관학 또는 문헌정보학</u>을 부전공한 사람</p>	준사서	<p>1. 전문대학 도서관과를 졸업한 사람</p> <p>2. 전문대학(중전의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지정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p> <p>3.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중 <u>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u>을 부전공한 사람</p>
<p>비고 : <u>법 제38조제 3항</u>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당해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자료가 1천500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점)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p>		<p>비고 : <u>법 제37조제 2항</u>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서의 근무경력은 당해 도서관의 열람실 면적이 110제곱미터·자료가 1천500권(시청각자료인 경우에는 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 표에 의한 도서관등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p>	